

(사)축산물 HACCP기준원 소개



우리회와의 간담회에서
(좌측부터 haccp기준원 교수일 평가국장, 우리회 강호 사무총장, 우리회 정영채 회장, haccp기준원
곽형근 원장, haccp기준원 이원철 총무팀장

1. 축산물HACCP기준원 설립 배경 및 추진 경과

가. 설립 배경

- 식품안전사고의 빈발과 축산물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소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증대
- 식품의 원재료 관리에서부터 제조 과정,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종제품의 검사만으로는 안전성 확보 및 다양한 위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사전에 각 생산 단계마다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필요
- 또한 국제적으로 WTO나 Codex에서 농·축산물 및 식품의 교역에 보다 엄격한 식품위생 기준으로

HACCP를 권고함에 따라 수출증대를 위한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꾀하고 이를 통한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해 HACCP 도입

- 축산식품의 안전성 향상과 축산업의 발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적용한 HACCP는 98년 7월부터 축산물 가공장을 시작으로 2000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도축단계를 추가 적용하고, 05년 배합사료 생산단계, 06년 말에는 돼지농장 사육단계도 적용하기 시작하여 소와 닭 농장까지 차후 확대·적용을 추진하고 있음



곽형근 원장

- 사료 및 유통·판매 단계에 이어 농장 사육 단계 HACCP 적용까지 정부가 하기에는 조직과 인원의 한계, HACCP 적용 이후 사후관리 미흡등의 한계 내재
- 따라서 사육, 처리, 가공 및 유통·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분야별 전문 인력에 의한 사전 안전성을 높이고 HACCP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질 높은 HACCP 제도 운영을 위해 축산물 HACCP기준원을 설립. 업체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HACCP의 적용을 활성화 시키고 HACCP에 대한 전문가가 보다 깊이있고 효율적인 지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이로써 우리나라는 축산식품의 특성에 따라 사료에서부터 식탁까지(From Feed to Table) 선진형 사전 안전성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됨

나. 설립 추진 경과

- 2004년 7월 농림부의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수립 시 HACCP 적용 대상을 사육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 확대 적용기로 하고 그동안 관련 법령 개정 및 HACCP 평가기준 등을 통하여 제도적 기틀 마련
- 2006년 3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을 지정기로 함
- 2006년 9월28일 축산물HACCP기준원 창립 총회 개최
 - 가축사육·사료제조업·보관업·운반업·도축업·가공업·집유업·식육포장처리업·판매업을 하는 단체, 축산물 안전성과 관련된 기관 및 학회, 기타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회원으로 사단법인으로 출범

- 2006년 10월 18일 농림부 법인설립허가
- 2006년 10월31일 축산물HACCP작업장 지정 및 사후관리 담당기관으로 지정고시
- 2006년 11월 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련업무 이관
- 2006년 11월 27일 돼지농장 HACCP적용 검역원 고시 공고
- 2006년 12월 22일 HACCP교육 훈련기관으로 지정고시

2. 기준원 조직 구성

가. 직원 : 2국 7개팀(총 30명)으로 출범

- 관리국 - 총무팀(4), 교육·홍보팀(3)
- 평가국 - 개발팀(3), 유통팀(3), 농장팀(5), 가공팀(5), 사료팀(3)

나. 임원 : 이사 17명, 감사 2명



< 기준원 조직도 >

3. 기준원 업무현황

- 지금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시행해 오던 HACCP 적용 작업장 등의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를 이관 받아 축산물가공처리법 이하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근거하여 축산물HACCP기준원에서 수행하게 되었음
- 그 외에도 HACCP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조사·연구, 축산물 위생 관리 교육·홍보 및 기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 HACCP 관련 업무 수행

■ 업무 이관 현황

업종	종전		현행	
	신규지정	사후관리	신규지정	사후관리
축산물가공업	검역원 본원	16개 시·도	기준원	기준원
식육포장처리업	검역원 5개 지원	16개 시·도	기준원	기준원
식육판매업	검역원 본원	16개 시·도	기준원	기준원
배합사료제조업	검역원 본원	검역원 본원	검역원 본원 (3월 이후 기준원 이관 예정)	검역원 본원 (3월 이후 기준원 이관 예정)
농장사육단계 (’07년 신규)	-	-	기준원	기준원

■ 출범 후 팀별 업무 추진 현황

• 가공팀

- HACCP 지정 현황

출범 후 처리 건 수 (’06년 11월~12월 말)	’07년 1월 처리 건 수 (1월 12일 기준)	계
35건	14건	49건

(2007. 1. 12 기준)



적합	보완	부적합	계
1(2%)	47(96%)	1(2%)	49건(100%)

• HACCP 사후 관리 현황(다음 페이지 참고)

■ 농장팀

- 가축사육단계(돼지) HACCP 기준 고시(검역원 고시 제2006-6호 : ’06.11.27) 시행 준비
- ’06년 12월 양돈장 HACCP 지정 신청(우리밀축산 농장)
- ’07년 1월 초 최초 실사 완료 · 보완 조치

검역원으로부터 이관 건 수	기준원 접수 건 수	계
21건	54건	75건

(2007. 1. 12 기준)



처리				미처리	계
지정	보완	부적합	소계	31건	75건
17건(39%)	17건(39%)	10건(22%)	44건(100%)		

※ 접수 후 처리 기간(접수 ~ 1차 실사) : 35 ~ 40일

■ 유통팀

- 식육판매업 사후관리 : 2업체
- 식육판매업 고시 개정 평가기준 마련 관련 업무 협조
- 축산물 판매업 HACCP 적용 추진 활성화 관련 검역원, 시·도, 업계와 협의회 개최
- 축산물 운반 및 보관업 현장조사 참여
- '집유·운반·보관업소 HACCP 작성지침 및 모델개발' 협조

■ 사료팀

- 사료 HACCP 담당기관을 종전 검역원에서 기준원으로 이관 예정('07년 3월 경)
- 현행과 같이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최초인증심사 예정
- '06. 11월 이후 검역원의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현장출장에 참여

■ 교육·홍보

- 개원식 진행('06. 11. 14)
- 홍보리플렛 및 팸플렛 제작 후 관련 기관, 단체 및 소비자 홍보
- 홈페이지 개통, 작업 중
- 직원 워크 진행('06. 12. 18 ~ 12. 19)
- 홍보포스터 제작 및 발송
- 농림부 축산국과 연계 지하철 포스터 광고 진행 ('06. 12. 20 ~ '07. 2. 19)

■ 기타 업무

- 축산물HACCP 기술상담 센터 운영 및 활성화
- 1월부터 운영 시작

- 목적

- A. 축산 식품의 HACCP 제도를 활성화하고 질적인 수준 향상 도모
- B. 관련 민원인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과 편의성 제공

• 상담 내용

- HACCP 적용 작업장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상담
(축산물HACCP 지정 신청, 사후관리, 지정 재교부 등)

• 상담 방법

- 전화, Fax, 홈페이지 및 방문 상담

4. 향후 업무 추진방향

가. 추진 방향 :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 HACCP 관련 업무의 정립

나. 추진 내용

- HACCP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교육 실시
 - '06년 12월 22일 축산물위생교육기관 등 지정고시(농림부고시 제2006-72호)로 축산물HACCP 교육기관으로 선정
 - '07년에 HACCP를 기본과정, 전문가 과정, 정기경영자 과정편성 교육 실시 예정
- 가축(돼지) 사육단계 HACCP 추진 업무에 만전
- 판매단계 HACCP 추진의 활성화
- 집유·보관·운반단계 HACCP 추진 준비 적극 협조
- 가공단계 품목 확대 적용 추진에 적극 활동
- 배합사료 업무 이관 준비 및 추진에 만전 

